

제정 2005. 07. 14.
개정 2006. 04. 13.
개정 2007. 10. 30.
개정 2012. 10. 04.
개정 2014. 02. 18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표기는 “Korea Solidarity for Human rights of disability people with Brain lesion”로 하며 약칭으로 “KSHB”, “한뇌협”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한뇌협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해 증진과 협력을 도모하고 뇌병변 장애인 및 가족의 인권복지를 실현한다. 특히 뇌병변장애인들의 사회활동 (복지, 교육, 노동)에 장벽과 차별의 원인을 제거하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한뇌협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② 한뇌협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도에 지역협회(지역명+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를 둔다. 지역협회의 장은 사무실의 소재지, 연락처 및 지부 임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협회에는 지역회장, 지역협회 규약이 정하는 수의 임원 및 지역회장과 임원으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를 둔다. 지역회장은 지역협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역협회 임원은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역회장이 임명한다.

⑤ 지역협회는 이 정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⑥ 지역협회의 활동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는 지역협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회장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협회가 한뇌협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협회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협회가 한뇌협의 업무를 방해하여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 4 조 (사업) 한뇌협은 제 2조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뇌병변장애인 및 가족의 인권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
2. 뇌병변장애인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
3. 뇌병변장애인들의 의식개혁 및 삶의 전반문제 해결을 위한 자립생활운동 사업
4. 뇌병변장애인의 사회 참여방안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5. 시민사회와 장애인 단체의 적절한 정책교류를 통한 정부 장애인 복지정책 제안 사업
6. 외국 장애인 단체와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및 국제 대회 참여 · 개최 사업
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운영 사업
8. 뇌병변장애여성의 인권향상 사업
9. 뇌병변장애인의 문화, 예술에 관한 사업
10.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11.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향상을 위한 스포츠 사업
12.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① 제 2 조에 규정된 목적에 찬성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뇌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한뇌협에서 제명된 자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 1.정회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뇌병변장애인.
- 2.일반회원: 뇌병변장애인의 가족, 뇌병변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로 한뇌협 또는 시·도지역협회에서 회원자격을 인정하는 자
- ② 후원인: 회원이 아닌 자로 본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일정한 금전을 납부하는 사람
- ③ 한뇌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①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총회 의결권
3.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4. 사업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자료공개를 요구할 권리

②다만, 일반회원은 정회원의 권리 중 회장의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③ 회원으로서의 권리 중 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은 1년간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총회 전 7일 전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1.총회에 출석 하여야 할 의무
- 2.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 하여야할 의무
- 3.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하여야 할 의무
- 4.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포상 및 징계) ①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한뇌협을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②(포상) 한뇌협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 또는 외부의 인사, 조직에 대해 이사회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③회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 1.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2.정당한 사유 없이 한뇌협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 3.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및 이사회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4.정당한 사유 없이 한뇌협의 업무를 방해하여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④회원을 징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이사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의 소명과 필요한 조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한다.

⑤징계 정도, 징계 절차 및 징계 위원회의 구성 등 징계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이사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한뇌협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 사 30인 이내
4. 감 사 2인

제 10 조 (임원의 선임) ① 한뇌협의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한다.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한뇌협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및 이사회에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한뇌협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한뇌협에 재산상 손실을 가한 경우

② 회장이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한뇌협의 재산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배임, 절도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3. 과실범이 아닌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집행유예 제외)를 받아 확정된 자. 다만, 한뇌협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업무 상 횡령, 배임, 절도는 제외)에는 이

사회에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모두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궐위시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한뇌협을 대표하고 업무 및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회장이 사전에 부회장 중에서 정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한뇌협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한뇌협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 호 및 2 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 3 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한뇌협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제 15 조 (총회의 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한뇌협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총회는 한뇌협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6 조 (총회의 구분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2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장이 회의 안건, 장소, 일시를 기재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문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제 및 의안 발의, 총회의 운영과 의사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 또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제 17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대표자를 지정하고, 회의 안건을 제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4조 제 4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2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고, 회의 안건을 제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장이 궐위 되거나 총회 소집을 2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하나에 규정된 재적이사 과반수, 감사 2인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회장은 각각의 경우 지정된 대표자가 수행한다.

③ 총회에 안건을 제출 하고자 하는 회원은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시작 전에 회장에게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한뇌협외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승인 및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단, 정관 11조 각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 승인
6. 기본 재산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한 사항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반복 할 수 있고, 이사회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19 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한뇌협외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재적회원이란 이 정관 6조 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

②한뇌협의 총회는 총회장에 출석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장 출석회원은 재적회원 중 불참회원으로부터 서면 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 참석만을 위임 받을 수 있으며,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0 조 (의결 제적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3.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 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

2절 이사회

제 21 조 (이사회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2 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전송, 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부회장,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의 업무 보좌와 사무부서의 지원을 위해 이사 및 이사회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사회 업무의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 직속 실행위원회를 둔다. 실행위원회의 목적과 구성과 업무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23 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 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 채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기타 한뇌협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4 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 회장은 그 서면결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호에 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사무 부서

제 26 조 (사무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한뇌협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지역협회

제 27 조 (지역협회의 설립) ① 한뇌협은 제3조 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에 지역협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역협회의 사무소는 각 시·도 중심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역협회 설립 및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28 조 (지역협회 운영규정) 지역협회는 정관에 준하는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한뇌협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 (지역협회의 임원) ① 지역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 1. 지역회장 1인
- 2. 감사 2인 이내

3. 운영위원 10인 이내

② 지역회장은 지역협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한다. 만약 12조 ①항에 해당될 경우 이사회는 승인을 불허하고 지역협회에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역회장은 지역지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30 조 (지역협회 운영) ① 이사회는 귀속재산의 처분을 제외한 재산운영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지역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역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1 조 (지역협회의 인준) 신규 지역협회의 인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부설 센터

제 32 조 (센터 설치) 한뇌협 목적사업 수행 중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한뇌협의 부설로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3 조 (센터 규정)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

제 8 장 재정과 회계

제 34 조(재산의 구분) ① 한뇌협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 재산은 한뇌협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5 조 (재산의 관리) ① 한뇌협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한뇌협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즉시 한뇌협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한뇌협이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 36 조 (재원) ① 한뇌협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회비
-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3.각종 기부금
- 4.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5.기타

② 한뇌협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뇌협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37 조(회계 년도) 한뇌협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8 조(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① 한뇌협의 회계년도 1개월 전에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② 한뇌협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9 조 (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 40 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 회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1 조 (차입금) 한뇌협이 수행상 현금지출에 일시적인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시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 42 조 (정관의 변경) 한뇌협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43 조 (해산 및 합병) ① 한뇌협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한뇌협을 해산시 잔여 재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44 조 (준용 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소관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5 조 (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한뇌협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 한다.

별지1. [법인 기본자산 내역]

〈별지 1〉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평가액(원)	비 고
동산(현금)	40,000,000	임대보증금
	10,000,000	예치금
합 계	50,000,000	